

#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 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4. 15. 김병룡 의원 외 4인
- 회부일 : 2009. 4. 16.
- 상정일 : 2009. 4. 22.(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김병룡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, 농업기술,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귀농인이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(안 제2조)
-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-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귀농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, 제8조)
-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, 지원의 취소 및 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,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,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타지역에서 제천시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에서 농업 진흥과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의 관련법령에 의거 법적으로 달리 이견은 없음.
-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,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득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, 의료 및 자녀학자금 지원,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, 지원의 취소 및 자금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- 최근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'신 빈곤층'이 늘면서 농촌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의 증가와 퇴직 이후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전·남북 12개 시군, 경북 7개 시군 등 전국 23개 시군에서 기시행하고 있으며
-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조기 정착은 물론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, 21세기 기술농업 인력을 중점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귀농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시부터 농업인요건 충족 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 되는 바 향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 육성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사전절차 이행

- 의견청취 협의 : 2009. 3. 31. [의장 ⇒ 제천시장]
- 의견통보 접수 : 2009. 4. 14.
  - 귀농인에 대한 지원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완화(안 제2조제3호)
  - 주택(빈집) 수리를 위한 시설보조 규정 삭제(사유 :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귀농인은 주거시설을 “기”확보한 것으로 예측)

※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)

**4. 질의 답변 요지**

“ 없 음 ”

**5. 소수 의견**

“ 없 음 ”

**6. 토론 요지**

“ 없 음 ”

**7. 심사 결과**

“ 원 안 가결 ”

**8. 심사보고 붙임서류**

-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부. 끝.